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91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의의원 : 전홍배 의원,

최재규 의원, 이연숙 의원

##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발생 시,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보상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직무 범위 확대(회기중 또는 공무여행→상시)(안 제2조제1호)
- 나. 직무 인정 범위·장애 및 상해 기준 정비(안 제3조~제5조)
- 다.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3. 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나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

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3. 그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상 재해인지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를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이 조에서 “시 의원”이라 한다)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시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많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을 따른다.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의원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의 청구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상해등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청구권자가 그 사실(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다는 사실,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의원 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청구권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

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권자와 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대한 사실여부와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1. 의원 1명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의회 및 예

산 업무 소관 국장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④ 군수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심의회는 제6조 및 제2항에 따라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의회 업무 소관 부서의 팀장이 한다.

**제13조(심의회의 수당 등)**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심의회에 출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거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접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 년 월 일		
청 구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		전 화 번 호	
	청 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사 망	<input type="checkbox"/> 장 애( ) 등 급	<input type="checkbox"/> 상 해	
	은 행		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			상 병 발 생 일 자 및 시 각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p>「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p>					
<b>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귀 하</b>					
첨 부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 :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li> <li>2. 장애 : 상병발생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li> <li>3. 상해 : 상병발생경위서 1부, 진단서 1부, 진료비명세서 1부</li> <li>4.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li> <li>5. (대리인) 보상대상의원의 위임장 1부</li> </ol>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접수	제 호	의원 상해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처 리 기 간
				즉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 년 월 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사 망 <input type="checkbox"/> 장 애(                      등급) <input type="checkbox"/> 상 해			
청 구 내 용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경 위 조 사 내 용				
심 의 결 과	<결과>  <이유>  <심의위원 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 를 통보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b>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b>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px; height: 5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인/서명           </div> </div> <div style="margin-top: 20px;"> <b>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귀 하</b> </div>				

□ 「지방자치법(법률)」(2024.1.9. 타법개정, 2024.5.17. 시행)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2025.1.7. 일부개정, 2025.7.8. 시행)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25세 미만인 사람

- 2.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 일부개정, 2025.1.1. 시행)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 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군·

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2025.7.7. 일부개정, 2025.7.8. 시행)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법 제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및 법 제40조제1항제4호·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상태를 말한다.

③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孫子女)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따른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1]

공무원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가. 배우자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나.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자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다.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무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자녀·손자녀 및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공무원등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요양·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

###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 1. 공무상 부상

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안전 또는 시설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출근·퇴근·부임·귀임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되, 그 이탈 또는 중단이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부상으로 본다.

-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2)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3) 공무원이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4)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5) 공무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 2. 공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방사선·자외선·엑스선·유해광선·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3) 공무수행 중 습지·산지·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라. 근골격계 질병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힘줄·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바. 직업성 암

공무수행 중 석면·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사.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 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3.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질병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직무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장애등급(제40조제1항 및 제54조의3제1항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척주(脊柱)에 극도의 기능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동시에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다.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다.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애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마.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바.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애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 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 나.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애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다.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애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라.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마.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애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7.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 나.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 다.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라.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애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마.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 나.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 다.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라.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애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동시에 남은 사람
  - 마. 척주에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5.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6.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7. 한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8. 빗장뼈(쇄골)·복장뼈(흉골)·갈비뼈(늑골)·어깨뼈(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팔과 다리의 긴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5.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4급

1.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2. 한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비고: 위 표에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조례)」  
(2024.9.20. 일부개정·시행)

[별표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의 정 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월 1,500,000원
		월 500,000원
월 정 수 당	2023년	월 3,389,33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 + (2023년 월정수당 ×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5년	2024년 월정수당
	2026년	2025년 월정수당 + (2025년 월정수당 ×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보상금 지급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4조~제8조)
- 보상심의회 민간위원의 수당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1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중복 적용이 안되며, 보상금이 많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하므로,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4조~제8조)

구분	지급액(원)
제3조제1항제1호 (사망)	48,000,000
제3조제1항제2호 (상해로 인한 장애)	24,000,000
제3조제1항제3호 (상해)	치료비 전액 (24,000,000 이하)

- 보상심의회 민간위원의 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안 제13조)

작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전 홍 배 (☎ 2058)